

# 2007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06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2007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세입결산액 (B)	세출결산액		차인잔액		
				B/A (%)	(C)	C/A (%)	(D)=(B)-(C)	D/A (%)
계	255,050,669,000	823,496,753,517	833,926,982,065	101	629,268,300,562	76	204,658,681,503	25
일반회계	202,155,949,000	756,984,524,567	766,613,167,208	101	589,430,864,338	78	177,182,302,870	23
특별회계	52,894,720,000	66,512,228,950	67,313,814,857	101	39,837,436,224	60	27,476,378,633	41

### 나. 세입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징수결정액 (B)	수납액		미수납액		
				B/A (%)	(C)	C/A (%)	(D)=(B)-(C)	D/A (%)
계	255,050,669,000	823,496,753,517	841,196,291,761	102	833,926,982,065	101	7,269,309,696	1
일반회계	202,155,949,000	756,984,524,567	771,882,158,921	102	766,613,167,208	101	5,268,991,713	1
특별회계	52,894,720,000	66,512,228,950	69,314,132,840	104	67,313,814,857	101	2,000,317,983	3

다. 세출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지출액 (B)	이월액		집행잔액 (D)		
				B/A (%)	C/A (%)			
계	255,050,669,000	823,496,753,517	629,268,300,562	76	172,205,582,670	21	22,022,870,285	3
일반회계	202,155,949,000	756,984,524,567	589,430,864,338	78	152,371,373,280	20	15,182,286,949	2
특별회계	52,894,720,000	66,512,228,950	39,837,436,224	60	19,834,209,390	30	6,840,583,336	10

라. 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조금 집행잔액	순세계 잉여금
계	204,658,681,503	39,470,594,830	112,302,670,850	20,432,316,990	1,709,307,773	30,743,791,060
일반회계	177,182,302,870	33,465,889,280	112,302,670,850	6,602,813,150	1,699,210,113	23,111,719,477
특별회계	27,476,378,633	6,004,705,550	-	13,829,503,840	10,097,660	7,632,071,583

※ 순세계잉여금=세입결산액-세출결산액-명시이월-사고이월-계속비이월-보조금집행잔액

마. 회계별재무제표 총괄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재정상태보고서			재정운영보고서		
	자 산	부 채	순자산	수 익	비 용	운영차액
일반회계(A)	1,793,199,060,861	14,747,841,961	1,778,451,218,900	209,884,702,077	146,150,406,544	63,734,295,533
공기업특별회계(B)	52,236,306,100	4,687,356,578	47,548,949,522	4,038,700,944	6,042,226,159	△2,003,525,215
기타특별회계(C)	133,850,616,686	667,150,233	133,183,466,453	29,757,633,569	11,869,685,997	17,887,947,572
기 금(D)	3,203,855,576	0	3,203,855,576	708,100,361	403,632,910	304,467,451
내부거래(E)	22,157,591,000	0	22,157,591,000	5,087,423,050	5,087,423,050	0
합 계 (A+B+C+D-E)	1,960,332,248,223	20,102,348,772	1,940,229,899,451	239,301,713,901	159,378,528,560	79,923,185,341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췌서 붙임”

- 지방자치법 제134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

나. 기타사항

-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, 재무보고서 붙임
-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붙임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지방자치법

제134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]

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59조 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서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계속비결산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채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,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.